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등

가. 보험종목의 명칭 :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밸런스PLUS변액연금보험

나. 연금지급형태

보험의 종류	연금지급형태		
적립형	종신 연금형	보증기간부 (개인계약, 부부계약)	정액형(10년,15년,20년,25년,30년, 35년,40년,100세 보증)
			체증형(10년,20년 보증)
			소득보장형(10년,20년 보증)
	보증금액부	일반형	
자유형			
거치형	종신 연금형	보증기간부 (개인계약, 부부계약)	정액형(10년,15년,20년,25년,30년, 35년,40년,100세 보증)
			체증형(10년,20년 보증)
			소득보장형(10년,20년 보증)
	보증금액부	일반형	
		자유형	
	확정연금형(5년,10년,15년,20년,30년,50년,60년)		
상속연금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적립형	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다만,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은 최소 14년부터 최대 30년임)
	거치형	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다만,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은 최소 10년부터 최대 30년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종신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 연금지급일까지 상속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나.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연금개시 나이(Y)	보험료 납입주기
적립형	14~16년	5년납, 7년납	만15세 ~ (Y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세	45세 ~ 70세	월납
	17년	5년납, 7년납, 10년납			
	18년 이상	5년납, 7년납, 10년납, 11년~(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7)년납			
거치형	10년 이상	일시납			일시납

※ 주피보험자가 남자인 부부계약의 최저 연금개시나이는 48세임

※ 연금지급형태를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로 선택한 경우, 최대 연금개시나이는 “100세-보증지급
기간+1” 세 임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1) 적립형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를 말하며, 기본보험료는 20만원 이상으로 한다.

(2) 거치형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납입한 일시납보험료를 말하며, 일시납보험료는 1,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1) 적립형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는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로 구분된다.

1)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매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에 기본보험료와 함께 정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연금개시시점 만 7년 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다.

- 1회에 10만원 이상으로 납입되어야 한다.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변경 및 중지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 계약자가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및 변경, 중지를 신청한 경우 해당 내용은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익월 납입기일부터 적용한다.

- 해당 시점의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차회 이후의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때 납입되지 않은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2) 수시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시점 만 7년 전까지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한다. 수시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가능하다.

3)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① 계약자가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납입총액의 2배 이내로 한다. 다만,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의 1회 최저납입금액은 10만원으로 한다.

② 1회에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경과 기간별로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회에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해당월까지의 납입할 기본보험료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2) 거치형

- 1)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 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연금개시 전시점 만 7년 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 2)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00%이내이며, 연간(보험년도 기준)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0% 이내로 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적립형에 한함)

주계약 기본보험료가 5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할인한다.

할인조건	할인금액
주계약 기본보험료 5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주계약 기본보험료 50만원 초과금액의 2.0%
주계약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주계약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금액의 2.5% + 10,000원
주계약 기본보험료 2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주계약 기본보험료 200만원 초과금액의 3.0% + 35,000원
주계약 기본보험료 500만원 초과	주계약 기본보험료 500만원 초과금액의 4.0% + 125,000원

7. 보험료의 선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적립형에 한함)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표준이율 + 1.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가’에 따라 승낙한 계약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표준이율로 계산한 이차포함)과 연체된 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연체된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표준이율로 계산한 이차포함)등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다. ‘나’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1) 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가 완납된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3영업일」
- (2)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3영업일 이내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3영업일」
- (3)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3영업일이 지난 후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낙일

라. ‘가’ 내지 ‘다’에도 불구하고 ‘17.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마’에서 정한 이체 사유가 발생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의 경우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경우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적립형에 한함)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표준이율 + 1.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적용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나. 다만,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하고, 일반계정 전환이전의 경우에는 「신청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인출 이후에는 계약자적립금이 500만원 미만인 범위에서 인출할 수 있다.

- 다.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중도인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다만, 중도인출수수료는 연4회 까지 면제된다.
- 라. ‘가’ 에도 불구하고,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총 인출금액이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마. 인출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14.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의 ‘나’ 에 따라 계산한다.
- 바.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한다.
- 사. ‘나’ 에도 불구하고 ‘18.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마’ 에서 정한 이체 사유가 발생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계약의 경우 인출신청일에 지급한다.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가.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을 기준으로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 나.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의 80% ~ 120%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변화 등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조정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있다.

$$\text{공시기준이율}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times \alpha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1 - \alpha)$$

(1)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①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국고채(5년) 수익률 × 국고채 가중치(β 1)

+ 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 × 회사채 가중치(β 2)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 3)

+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 ×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 4)

- ②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는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 ④ 국고채 가중치(β 1), 회사채 가중치(β 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 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 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text{국고채 가중치}(\beta 1) = \frac{a}{a+b+c+d}$$

$$\text{회사채 가중치}(\beta 2) = \frac{b}{a+b+c+d}$$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 \frac{c}{a+b+c+d}$$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 = \frac{d}{a+b+c+d}$$

-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2) 운용자산이익률

- ①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운용자산이익률} = \text{운용자산수익률} - \text{투자지출률}$$

- ②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p>운용자산수익률(%)</p> $= \frac{2 \times I}{\sum_{t=1}^{12} [\text{직전}(t+1)\text{개월말운용자산} + \text{직전}(t)\text{개월말운용자산}] / 12 - (I - E)} \times 100$ <p>투자지출률(%)</p> $= \frac{2 \times E}{\sum_{t=1}^{12} [\text{직전}(t+1)\text{개월말운용자산} + \text{직전}(t)\text{개월말운용자산}] / 12 - (I - E)} \times 100$ <p>- I : 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수익 - E : 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비용</p>
--

- ③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3)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 ①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p>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α) = $\frac{A/B+C}{A+C}$</p> <p>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alpha$) = $1 - \frac{A/B+C}{A+C}$</p> <p>- A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p>
--

- ②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③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④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수입 보험료」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⑥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한다.

다. ‘가’의 공시이율은 동종 계정에 있는 동종상품[‘가’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해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 라.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 마.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연복리 2.0%,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를 적용한다.
- 바.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지침’에 따른다.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다.
- 나. 보험계약대출금액은 「신청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배된 금액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보험계약대출이율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차감한 이율로 계산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으로 적립한다.
- 다.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은 상환일부터 「상환일 + 제3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후 「상환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며, 보험계약대출적립금계정에서는 제외한다. 또한,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 라. 적립형의 경우, 회사는 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 마. ‘나’에도 불구하고 ‘18.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마’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이후 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후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

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바.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납입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면, 회사는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이 계약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산출하고, 이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나. ‘가’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적립형의 제1회 보험료 또는 거치형의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과 승낙일 중 늦은 날
- 이체금액 :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적립형의 경우 제1회 보험료, 거치형의 경우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 납입 후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까지는 표준이율로 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펀드별 편입 비율로 가중 평균한 투자수익률을 적용한 금액

(2) 적립형의 제2회 보험료

① 「월계약해당일 - 제3영업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월계약해당일」과 제1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중 늦은 날
- 이체금액 :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월계약해당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

② 「월계약해당일 - 제2영업일」,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납입일 + 제3영업일」과 제1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중 늦은 날
- 이체금액 :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월계약해당일부

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

③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납입일 + 제3영업일」
- 이체금액 : 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3영업일」 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

(3) 적립형의 제3회 이후의 보험료

① 「월계약해당일 - 제3영업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월계약해당일」
- 이체금액 :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② 「월계약해당일 - 제2영업일」,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납입일 + 제3영업일」
- 이체금액 :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월계약해당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

③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납입일 + 제3영업일」
- 이체금액 : 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3영업일」 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

(4) 추가납입보험료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납입일 + 제3영업일」
- 이체금액 :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3영업일」 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

다. ‘나’ 에도 불구하고 ‘18.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마’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계약의 경우 이 보험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운용한다.

14.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매월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총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 ‘16.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연금적립금에 관한 사항’ 및 ‘19. 연금지급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begin{aligned} & \text{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end{aligned}$$

$$\begin{aligned} & \text{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 \text{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quad \times \frac{\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end{aligned}$$

다. ‘나’의 ‘감액(또는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또는 인출)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나’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15.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에 관한 사항 (적립형에 한함)

가.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의 50% 경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 계약해당일 이후부터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라’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여 보험료 전액의 납입 종료(이하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를 신청한 시점부터 연금지급개시전일까지의 기간(이하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기간’이라 한다)동안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다.

다. ‘가’ 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 를 신청할 수 없다.

1.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 를 신청한 후 취소하거나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 기간’ 이 종료된 경우
2.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납 미만인 경우
3. 보험료 납입기간의 50%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4.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라.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 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퇴직: 퇴직증명서
- (2)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마. ‘가’ 내지 ‘라’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 를 신청한 후 3년 이내에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기간’ 은 그 때부터 종료된다. 이 경우 계약자는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 를 신청한 시점부터 신청 취소일까지의 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를 ‘사’ 에서 정한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바. 회사는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기간’ 동안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차’ 에서 정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기간’ 중 ‘차’ 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기간’ 은 그 때부터 종료된다. 이 경우 계약자는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 를 신청한 시점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를 ‘사’ 에서 정한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사. ‘마’ 또는 ‘바’ 에 따라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 가 신청취소 또는 종료된 이후의 최초 보험료 납입기일은 신청취소 또는 종료 후 최초로 다가오는 월계약

해당일로 연기되며,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이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를 신청한 시점부터 신청취소 또는 종료일까지의 기간만큼 연장된다.

아. ‘사’에 따라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의 종료시점이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연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나이가 연기된다.

자. 회사는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기간’ 중 ‘차’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기간’의 종료[‘차’에서 정한 금액이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더 이상 공제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차. 회사는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한다.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 계약체결비용 +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 후) + 특약 영업보험료(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보험료납입기간 이내에 한하며,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

카. ‘잔여 보험료 납입 종료’ 신청 이후에는 ‘차’에서 정한 금액을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하므로 해지환급금은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으며, ‘18.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마’에 의해 계약자적립금이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조기에 이체될 수 있다.

타. 회사는 ‘차’ 및 ‘카’에 관한 내용을 상품안내자료에 기재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6. 기본보험료 감액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기본보험료를 ‘5.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기본보험료 한도

내에서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일 이후부터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종신연금형에 해당되는 부분은 감액할 수 없다.

나. 계약자의 기본보험료의 감액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가’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감액에 따라 변경되는 월공제액 및 보험가입금액은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한다.

라. 기본보험료 감액이 있을 경우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다만, ‘가’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을 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다.

17.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연금적립금에 관한 사항

가. 최저사망보험금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보증한다. 최저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해 위험보험료가 보험기간 중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써 특별계정 투입금액 및 계약자적립금 등이 감소할 수 있다.

나. 최저연금적립금

(1) 최저연금적립금이라 함은 연금개시시점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연금개시전까지 경과확정보증금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최저연금적립금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에 한하여 보증된다.

(2) 경과확정보증금이라 함은 1차월도에는 계약일의 기본보험료에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별 보증비율(이하 “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2차월도 이후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과 매월 계약해당일(매월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 날로 한다)의 “계약자적립금”과 “직전월도 계약해당일의 경과확정보증금” 중 큰 금액으로 산출한

다.

구 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별 보증비율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적립형	14년 ~ 20년	100%
		21년 이상	110%
	거치형	10년 ~ 14년	100%
		15년 ~ 20년	105%
		21년 이상	110%

- (3) ‘(2)’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자적립금을 중도 인출하거나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한 경우 직전월도 계약해당일의 경과확정보증금은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begin{aligned} & \text{감액 직후의 「경과확정보증금」} \\ & = \text{감액 직전 「경과확정보증금」}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end{aligned}$$

$$\begin{aligned} & \text{인출 직후의 「경과확정보증금」} \\ & = \text{인출 직전 「경과확정보증금」} \\ & \quad \times \frac{\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 금액(인출수수료 포함)}}{\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end{aligned}$$

- (4) ‘(3)’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직전월도 계약해당일의 경과확정보증금을 계산하는 경우의 “감액(또는 인출) 직전 경과확정보증금” 이라 함은 해당 감액(또는 인출) 발생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3)’ 에 따라 계산된 경과확정보증금을 말한다.

18.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1) 변액보험의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 “펀드” 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펀드운용실적이 매일 평가되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된다.
- (2)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지나 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한다.

- (3) 특별계정 운용보수(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합 한 보수를 말하며, 이하 같다)는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 (4)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도 변경일 부터 변경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적용한다.

나. 펀드의 유형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① 채권형 :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발행의 국·공채 및 특수채, 회사채[신용등 급 BBB+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포함)을 포함] 및 채권형집합투자증 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 의 9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 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밸런스변액연금보험의 “채권형(설정일 2010년 4월 30일)” 으로 한다.
- ② 코리아인덱스형 : 국내 상장주식(코스닥주식 포함) 및 주식형집합투자증 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 의 9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 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밸런스변액연금보험의 “코리아인덱스 형(설정일 2010년 4월 30일)” 으로 한다.
- ③ 코-원자재인덱스형 : 국내외 주요 원자재인덱스 관련 주식 및 집합투자증 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 또한 국내 상 장주식(코스닥주식 포함) 및 주식형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0%이내로 투자하고, 나 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 안츠파워밸런스변액연금보험의 “코-원자재인덱스형(설정일 2010년 4월 30

일)” 으로 한다.

④ 글로벌인덱스 리스크컨트롤형: 국내외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순자산(NAV)의 9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한다. 글로벌인덱스 수익률의 변동성에 따라 펀드 내 글로벌인덱스를 추종하는 기초자산의 투자비율을 주기적으로 조절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글로벌인덱스는 KOSPI200Index, S&P500Index, HSCEI로 구성되며, 위험자산의 변동성 수준에 따라 위험자산의 투자비율은 0%이상 100%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채권 또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밸런스변액연금보험의 “글로벌인덱스 리스크컨트롤형(설정일 2012년 4월 20일)” 으로 한다.

⑤ 밸류고배당주식재간접형: 국내 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다만, 주식 투자에 있어 고배당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배당수익을 도모한다.

⑥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 전세계 다양한 자산군 (주식, 채권, 원자재, 단기자산 등)에 투자하는 국·내외 상장집합투자증권 (ETF) 또는 지수선물 등에 순자산(NAV)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주기적으로 펀드 내 편입 자산을 선별/교체하며, 사전에 정해진 펀드의 목표 변동성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선별된 투자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뉴파워리턴변액유니버설보험의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설정일 2014년 5월 7일)” 으로 한다.

(2) ‘(1)’ 의 투자대상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운용되며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3) ‘(1)’ 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새로운 펀드를 추가할 수 있다.

(4)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1)’ 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가격변동 등의 사유인 경우 3개월 이내, 해지 등의 사유인 경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특별계정 운용보수에 관한 사항

(1) 펀드 종류별 운용보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운용보수
채권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575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15767123%)
코리아인덱스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525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14397260%)
코-원자재인덱스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545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14945205%)
글로벌인덱스 리스크컨트롤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30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11794521%)
밸류 고배당 주식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3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11780822%)
글로벌다이나믹 멀티에셋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3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11917808%)

(2) 펀드 종류별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다음을 한도로 한다.

구분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채권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7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1917808%)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코리아인덱스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12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3287671%)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코-원자재 인덱스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8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2328767%)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3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821918%)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글로벌인덱스 리스크컨트롤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20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5479452%)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3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821918%)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밸류 고배당 주식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글로벌다이나믹 멀티에셋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 자적립금의 0.2000% (매일 특별계정 계약 자적립금의 0.0005479452%)	매년 특별계정 계약 자적립금의 0.0300% (매일 특별계정 계약 자적립금의 0.0000821918%)	매년 특별계정 계약 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 계약 자적립금의 0.0000410959%)

- (3) ‘(2)’ 에서 정한 투자일임보수 및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의 경우, 실제 지급한 보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회사는 운영보수에서 그 초과분을 충당한다.
- (4) 특별계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1)’ 및 ‘(2)’ 에서 정한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 이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 수수료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한다.

라.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1) 계약자는 계약 체결을 할 때 아래에서 정한 펀드플랫폼 중 1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을 할 때 선택한 펀드플랫폼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까지 적용된다. 다만, ‘밸류 고배당 주식 재간접 플랫폼’은 적립형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다.

펀드플랫폼	안전자산펀드	성장자산펀드
코리아인덱스 플랫폼	채권형	코리아인덱스형
코-원자재인덱스 플랫폼	채권형	코-원자재인덱스형
글로벌인덱스 리스크컨트롤 플랫폼	채권형	글로벌인덱스 리스크컨트롤형
밸류 고배당 주식 재간접 플랫폼	채권형	밸류 고배당 주식 재간접형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 플랫폼	채권형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

- (2)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는 ‘마’ 에서 정한 ‘펀드별 편입비율 적용 공식’ 에 따라 최초 계약을 할 때 선택한 펀드플랫폼 내 설정된 펀드에 자동 편입된다.
- (3) 이 보험에서 계약자의 신청에 따른 펀드플랫폼내 펀드적립금의 이전 또는 펀드의 편입비율 변경을 취급하지 않는다.
- (4) ‘(1)’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중 연1회에 한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다른 펀드플랫폼으로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전부에 한해 이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펀드플랫폼을 변경한 이후의 펀드적립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는 ‘마’ 에서 정한 ‘펀드별 편입비율 적용 공식’ 에 따라 변경된 펀드플랫폼 내 설정된 펀드에 자동 편입된다.
- (5) 회사는 ‘(4)’ 에 따라 펀드플랫폼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10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다만, 이전하는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전 가능하다.
- (6) 회사는 ‘(4)’ 에 따른 펀드플랫폼을 변경할 때 펀드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
- (7)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5)’ 에서 정하는 날까지 펀드적립금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향후 펀드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10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 (8) ‘(1)’ 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새로운 펀드플랫폼을 추가할 수 있다.

마. 펀드자동재배분

(1)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선택한 펀드플랫폼내의 펀드 중 아래에서 정한 “펀드별 편입비율 적용 공식”에 따라 펀드별 편입비율을 산출하여,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까지 각 펀드별 해당 적립금을 안전자산펀드와 성장자산펀드에 자동 편입 할 수 있다. 이 때 펀드별로 편입되는 적립금은 “펀드별 편입비율 적용 공식”에 따라 최소 월 1회 이상(다만,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이 전일 대비 10%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는 변경횟수가 추가됨) 변경되므로 성장자산펀드 적립금액과 안전자산펀드 적립금액 또한 최소 월 1회 이상 변경된다. 다만, 펀드별 편입비율은 계약을 할 때 별도로 공지 한다.

펀드별 편입비율	펀드별 편입비율 적용 공식
성장자산펀드 펀드편입비율	[Min.(기준성장자산적립금×승수,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80%)] /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
안전자산펀드 펀드편입비율	100% - 성장자산펀드 펀드편입비율

주) ■ 기준성장자산적립금

: Max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 - (기준경과확정보증금×평가비율×1.02), 0]

· 기준경과확정보증금 : 경과확정보증금 ×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 / 계약자적립금

· 평가비율 : 1 / (1 + 할인이율(일기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경과기간)

· 할인이율 : 평가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이자율로서 계약별 할인이율은 계약시점의 이 보험의 연금개시전 일반계정 공시이율의 최저 보증이율로 함.

· 경과기간 : 계약일부터의 경과일수

■ 승수 : 성장자산펀드 편입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배수(범위:1.0~4.0)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별도로 공지함. 다만, 계약체결이후 변경될 때에는 계약자에게 서면(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안내함

(2) ‘(1)’ 에도 불구하고 ‘(1)’ 에서 정한 “펀드별 편입비율 적용 공식”에 따라 매일평가하여 산출된 “성장자산펀드 펀드편입비율”이 0%인 경우에는 0%로 산출된 날(이하 ‘기준안전자산도달일’로 한다)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여 해당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금 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운용한다.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날부터 일반계정에서 운용되는 계약자적립금을 ‘일반계정 전환적립금’이라 한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날부터 특별계정 운용 실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 (3)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실을 제10영업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통지한다.

바.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계정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다.
- (2) ‘(1)’에 따른 특별계정자산의 평가는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한다.

사.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특별계정을 설정할 때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아. 초기투자자금

- (1)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 (2) ‘(1)’에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①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② ‘①’의 규정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 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 ③ ‘①’ 및 ‘②’의 규정에 따른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자.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한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차.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 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한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2)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계약자에게 매 3개월마다 제공한다.

카. 특별계정의 폐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 ① 해당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②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③ 해당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④ ‘①’ 내지 ‘③’ 에 준하는 경우
- (2) 회사는 ‘(1)’ 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 (3) 회사는 ‘(1)’ 및 ‘(2)’ 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의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9.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이 보험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 연금지급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연금액 계산을 할 때에는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21.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다만,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제외)를 제외한 금액, 이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라 한다]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23. 기타’의 ‘가’에 따라 이체한다.

- (2)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있는 경우
- (3)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1)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2)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 (3)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4)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5) 월공제액을 총당하는 경우(다만, 월공제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6) ‘18.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마’에서 정한 이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7)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
연금개시일에 해당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8)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하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 (2) ‘(1)’에 따라 자금이체를 할 때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실적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22. 보증준비금에 관한 사항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보증준비금을 평가한다.

23. 기타

가. 이 보험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계약자적립금 및 이 보험에 부가되는 선택특약은 일반계정에서 운용한다.

나. 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체결 이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분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계약자적립금 변동에 관한 사항
- (2)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지할 때의 해지환급금

다. 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사업연도가 종료될 때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감독원에 보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특별계정 총좌수
- (2) 특별계정 기준가격
- (3) 특별계정 자산총액
- (4) 특별계정 자산운용 연평균 수익률
- (5) 특별계정 자산구성내역 및 비율
- (6) 특별계정 자산구성비율 변동내역
- (7) 특별계정 운용보수

라. 보험가입금액

- (1) 적립형: 기본보험료 × 12 × Min{납입기간, 10}
- (2) 거치형: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

마. 회사는 상품설명서에 다음과 같이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자서하도록 한다.

- (1) 이 상품은 “성장자산펀드 펀드편입비율” 이 0%로 산출된 경우에는 0%로 산출된 날의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을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연금개시시점까지 공시이율로 적립(최저보증이율 연복리 2.0%)한다.
- (2) 이 상품은 계약자의 신청에 따른 펀드플랫폼 내 펀드적립금의 이전 또는 편

드의 편입비율 변경을 취급하지 않는다.

- (3) 이 상품의 펀드자동배분은 최소 월 1회 이상(다만,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이 전일 대비 10%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는 추가함.) 되므로 성장자산펀드 적립금액과 안전자산펀드 적립액 또한 최소 월 1회 이상 변경된다.
- (4) 이 상품의 “펀드별 편입비율 적용 공식”에 적용되는 승수는 성장자산펀드 편입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배수(범위:1.0~4.0)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별도 공지한다. 다만, 계약체결이후 변경될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바.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생명표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3개월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한다.

사.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①’ 내지 ‘③’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 이후 다시 이 계약으로 변경은 할 수 없다.

① 적립형 : 납입기간이 지난 계약 (다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계약일부터 10년 이상 지난 계약)

거치형 : 계약일부터 5년 이상 지난 계약

② 전환신청일 기준으로 해지환급금(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인 계약

③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

- (2)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되며, 종신연금형 연금액은 이 계약 가입시점의 피보험자 나이와 전환후 연금개시나이에 따라 계산한다.

- (3)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은 이 계약 가입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4) 전환일시금은 「전환신청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한 전환전 계약의 해지환급금으로 하며, 전환시점은 「전환신청일 + 제3영업일」로 한다.

아.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자.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